



국무조정실
국무총리비서실

보 도 자 료

(배포) 2019. 1. 30(수)

1월 30일(수) 13:00 (회의종료) 이후 사용

비고	* 모두말씀 별도배포 * 공동배포 : 보건복지부		
담 당	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		과장 백승일, 사무관 임지영 (044-200-2290, 2292)
	보건복지부	장애인정책과 (안건 1, 4)	과장 이상진, 서기관 정순길, 윤수현 (044-202-3280, 3288, 3285)
		장애인권익지원과 (안건 2, 3)	과장 신용호, 사무관 정상환 (044-202-3310, 3301)

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, '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확정

- '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, '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조기인상' 등 포함
- 「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」, 「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」 논의
-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과 '심하지 않은 장애인'으로 단순화하는 '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' 보고

□ 정부는 1월 30일(수)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.

- * (참석) ▲ 민간위원 13명(김광환, 김영일, 김용득, 김용직, 김인규, 박혜경, 이지수, 조문순, 조종란, 조한진, 최경숙, 홍순봉, 황선화)
- ▲ 정부위원 13명(복지·문체부 장관, 국무조정실장, 기재·교육·외교·법무·노동·여성·국토부 차관, 법제처장, 방통위부위원장,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)

○ 위원회에서는 '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'과 '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'를 심의했고, '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'과 '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'을 보고·논의했습니다.

□ 먼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-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, 2018년 3월 제19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·발표된 바 있으며,
- 이에 따라 2018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2019년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.

□ 2018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, △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등 13개 법령 일괄 개정, △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수립·발표, △장애인연금 인상(20→25만원), △평창 패럴림픽 계기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장애인 정책의 주요 성과였습니다.

○ 또한, 생활 밀접 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, 장애인 보장구, 특수학교 및 학급 확대, 저상버스 보급 등이 구체적인 성과*로 평가됐습니다.

* △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: ('17)72,193명→('18)78,202명 △장애인 보장구: ('17)12만9천건→('18)13만8천건 △특수학교 및 학급: ('17)174개교 10,325학급→('18)176개교 10,676학급 △저상버스 보급률: ('17)22.4%→('18)25.3%

□ 올해는 △장애인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을 위한 '(가칭)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(장애인 커뮤니티케어) 수립, △'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(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)' 이행, △장애인연금 30만원 조기인상(25→30만원), △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신규 건립(30개소)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시행계획에 포함됐습니다.

□ 두 번째로 논의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쟁점질의 목록에 관하여 관계부처와 전문가, 장애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 보고서로,

○ 우리나라가 2008년 12월 국회비준을 거쳐 가입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9년 발효됐고, 이에 따라 매 4년*마다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

* 협약 발효 이후 제1차 국가보고서는 2년 내 제출토록 규정

○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제1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했고, 제2차 및 제3차 보고서는 병합하여 오는 3월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

○ 회의에서는 △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 여부 △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최소화 △성년후견제도의 당위성 여부 △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가입 제한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됐습니다.

□ 세 번째로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('19~'22년)을 논의했습니다.

- 인천전략은 한국이 주도하는 “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”의 행동 전략으로, 우리나라는 1차 중국, 2차 일본에 이어 아태 62개국의 선도국가로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,
-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인 빈곤, 정치, 접근성, 사회보호, 교육, 양성평등, 재난, 통계, 국제협력 등의 분야에서 2022년까지의 성과목표를 제시했습니다.

□ 마지막으로 올해 7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응급안전 등 4개 서비스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는 ‘장애등급제 폐지’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.

- 장애등급제 폐지는 종전의 1~6등급 체계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과 ‘심하지 않은 장애인’으로 단순화하고,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*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·지원하는 것입니다.

* 일상생활 수행능력, 인지·행동특성, 사회활동,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

-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장애인들이 혼란·혼선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, 장애계와 함께 남은 기간동안 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□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,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.

- ※ (붙임) 1. 장애인정책 2018년 주요 실적 및 2019년 계획
2. 제20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주요내용

장애인정책

'18년 실적 및 '19년 계획

보건 복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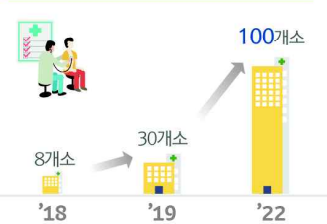
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



장애인보장구



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



교육 문화 체육

특수학교(학급)



문화누리카드 지원금



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



경제 소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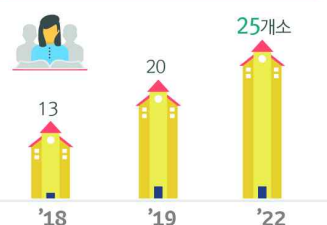
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



장애인 일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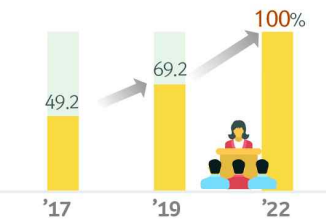


맞춤, 발달훈련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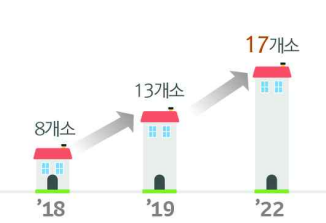


권익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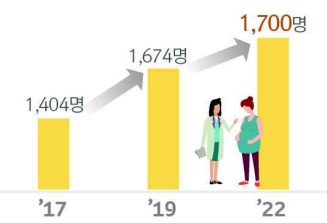
인식개선교육 이행률



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센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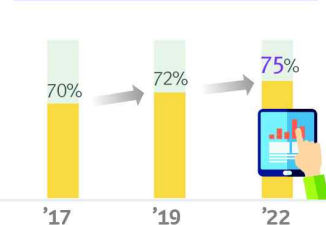


여성장애인 임신출산비용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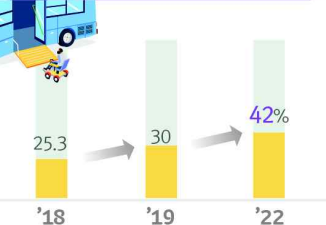


사회 참여

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



저상버스 보급률



민간 BF 인증



[안건1]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(2018~2022) 2019년 시행계획

< '18년 추진실적 >

- (복지·건강) 2018년에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을 개정했으며, 9월에는 “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” 수립·발표했습니다.
 - 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시행했고,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건강검진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.
- (교육) 장애영유아 어린이집(48개), 유치원 특수학급(122개), 특수학교(3개) 및 특수학급(351개)을 확충하고, 특수교육교원을 역대 최대규모인 1,173명 증원하여 특수교육 기반을 강화했습니다.
- (문화·체육)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7만원으로 인상(1만원↑)하고, 열린관광지 12개소 선정을 통해 여가 향수 기회 확대했습니다.
 - 장애인국민체육센터 3개소 및 체력인증센터 2개소를 추가하여 체육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.
- (소득·경제) 장애인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하고,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이행지도 등을 통해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했습니다. ('17년 2.76%→ '18년 2.85%)
- (권익·안전) 장애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, 보급하고,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조사권 등 권한을 강화했으며,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.
- (사회참여) 장애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개선('17년 전체국민 대비 70% → '18년 75%), 특별교통수단 운행범위 및 요금에 대한 표준 조례를 마련, 배포했습니다.

< '19년 추진계획 >

- (복지·건강) 19개부처 79개 서비스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되, 장애인활동지원, 보조기기, 거주시설, 응급안전 4개 서비스는 서비스 필요도 종합조사표를 마련하겠습니다.
 - 4월에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“(가칭)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(장애인 커뮤니티케어)”을 발표하고,
 - 지난해 발표한 “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”상 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, 성인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, 발달장애인 거점병원·행동발달증진센터 권역별 6개소 신규 지정, 발달장애인 공공신탁* 사업수행 방안 마련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겠습니다.
 - * 공익성·전문성 있는 공적 신탁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신탁자산 관리(국민연금공단)
 -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 4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고,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,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을 20개소 추가 확충할 계획입니다.
- (교육·문화·체육) 국립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하고, 특수학교·학급 신증설(3개교, 250학급) 뿐 아니라,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 및 지역내 특수학교를 거점지원센터 지정·운영을 통해 통합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.
 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지난해 이어 1만원 인상해 연 8만원 지원하는 등 여가향수 기회를 확대하고,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30개소 신규 건립,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도입하는 등 거주지 중심 체육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.
- (소득·경제)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할 것입니다.

-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처우개선 및 직업재활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,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 또한 대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촉진을 위해 고용개선계획 제출 의무화, 장애친화성 진단 등을 도입할 계획입니다.
- (권익·안전) 장애인식개선교육 질 개선 및 이행의무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,
 - 청각장애인 대상 영어시험(각종 자격시험)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고, 장애인 학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.
- (사회참여) 장애등급제 폐지 등 수요증가에 대응하여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개편안을 마련하고, 전국에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2천개를 설치하겠습니다.

[안건2]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

<추진배경>

- 우리나라는 '08년 UN장애인권리협약 국회 비준 후 제1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('11년)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심사('14년)를 받았습니다.
-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1차 국가보고서 심사결과에 대한 권고 사항('14) 및 제2,3차 국가보고서(병합) 심사*를 위한 쟁점질의 목록 채택하여 우리나라에 통보('18)했습니다.
- * 국가보고서 제2차 제출부터는 매 4년마다 후속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, UN장애인 권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2,3차 국가보고서 병합 심사 및 간소화 보고 절차 채택
- 정부는 관계부처 회의('18.11) 및 공개토론회('18.12) 등을 통해 전문가,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

<주요성과>

- (존엄성, 개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)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, 「정신건강증진법」 시행('17.5.)에 따라 강제입원요건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강화했습니다.
- (비차별) 장애인의 잔존의사능력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며 의사 결정을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'후견'제도를 2013년도에 도입했습니다.
- (사회참여 및 통합) 선거 정보 안내 및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올림픽 및 패럴림픽 기간 동안 장애인 편의증진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.
- (인식제고)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대상기관을 확대(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각급학교, 모든 사업장)하고 인식개선교육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.
- (기회의 균등) 특수학교 신·증설,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교육·직업의 최소한의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- (접근성) 특별교통수단 도입, 신축 공공건축물 BF인증 의무화, 웹 접근성 준수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높였습니다.

- (장애여성 및 장애아동)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비용(1백만원) 지원, 가정폭력,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, 장애아보육·교육시설 확충 등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했습니다.
- (통계, 국제협력, 협약이행) 아·태지역 장애통계구축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 장애정책의 기반이 구축되도록 했습니다.

<주요쟁점>

- 우리나라는 개인·집단 진정 및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는 아직 비준하지 않았으나,
 - 관계부처 및 장애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선택의정서 비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.
-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.
 -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는 정신장애인에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- 의사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는 치료 필요성, 자·타해 위험으로부터의 안전 보장측면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이 발생될 수 있으나,
 - 비자의입원 요건 강화,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.
- 후견제도와 관련하여 ‘대리의사결정’을 ‘조력의사결정’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,
 -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는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의 법적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현실적 조치임을 설명하고, 제도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및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- 「상법」 제732조(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) 개정 및 협약 제25조 e항(생명보험조항)의 유보 철회에 대하여는,
 - 「상법」 제732조는 의사능력없는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들을 보험범죄나 악의적인 유기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임을 설명할 예정이며,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협약 제25조제e항의 유보 철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[안건3] 인천전략 하반기 국가행동계획

<추진배경>

- “인천전략 로드맵”을 수립하고, 실질적 이행을 위해 각국별로 “국가 행동계획”을 수립하도록 의결한 '14년 유엔에스캅 총회의 결과에 따라,
 - 정부는 인천전략의 10개의 목표*별로 하반기(2019년~2022년) 세부 행동계획을 마련했습니다.

* ①빈곤감소 및 고용증진 ②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 강화 ③접근성 증진 ④사회보호강화 ⑤장애아동 교육 및 조기개입확대 ⑥양성평등 및 여성역량강화 ⑦장애관점 재난관리 ⑧ 장애통계 개선 ⑨장애인권리협약 비준 확대 ⑩국제 및 지역 협력 강화

<주요내용>

- (빈곤·고용) 장애인 연금인상 등 소득보장 급여를 개편하고,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및 직업재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△장애인 빈곤율: ('16) 31.5% → ('22) 25% △장애인 고용률: ('17) 36.5% → ('22) 38%

- (정치참여) 정부위원회 內 장애인 참여보장*, 투표편의 제공 확대, 투표편의 용구·용품 개발 등을 통해 정치참여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.

* 장애 관련 정부위원회에 위촉직 장애인 위원 1명이상 참여 확대

- (물리적 접근성) BF인증 의무화 단계적 확대, 특별교통수단 보급기준 개선 등을 통해 물리적 접근성을 지속 향상시키겠습니다.

* 편의시설 적정설치률 : ('18) 74.8% → ('23) 80%

- (사회적 보호강화)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, 활동 지원 내실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(커뮤니티케어) 선도사업 등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만성질환 유병률 : ('15) 76.2% → ('22) 74%

- (장애아동)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,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 강화, 특수교육기관의 확충* 등을 추진하겠습니다.

* 특수학교수: ('17) 174개 → ('22) 199개 (26개 ↑)

특수학급수: ('17) 10,325개 → ('22) 11,575개 (1,250개 ↑)

- (장애여성)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강화 및 예산 확대, 출산 지원,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·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(재난·위험)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·안전 통계 구축, 재난·안전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.

*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난·안전 통계 구축(장애분리 재난집계)

- (통계) 국내 장애인 통계의 국제 비교성 확보, 인천전략 이행지표 데이터 확보 및 질적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.

- (협약이행) 유엔장애인권리협약 “선택의정서” 비준을 검토하고, 관련 법령 등이 협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.

- (지역협력) 유엔에스캅 2기 협력사업 및 장애포괄적 ODA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.

<추진·평가체계>

- 인천전략 주도국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행방안별 담당부처 지정을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.

- 또한 유관기관, 장애인 단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, 정기적 교류를 통한 추진전략 및 정보의 공유·교환을 추진할 것이며,
- 연도별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평가 환류체계도 마련하겠습니다.

[안건4]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

< 장애인 등록제도 개편 >

-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장애인 인정 및 지원을 위해 의학적 평가에 따른 장애인 등록제도는 유지하되,
 - 종전의 1~6등급 체계는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1~3급)' 및 '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'으로 단순화합니다.

< 서비스 지원기준 개편 >

- 현물·현금지원 등의 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종합조사*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·지원합니다.
 - * 일상생활 수행능력, 인지·행동특성, 사회활동, 가구특성 등 종합적 평가
-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분야 4개 서비스에 우선 도입하고('19.7월), 이동지원('20년), 소득·고용지원('22년) 서비스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.
- 감면·할인 등의 서비스는 1~3급 장애인에 대한 종전의 우대혜택 유지,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활용합니다.
 - * 건강보험료 경감, 전기요금 감면 등

<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>

- 읍면동에서는 생애주기·장애유형에 따른 서비스를 선별·상담하고, 서비스 수급희망 이력제를 통해 누락된 서비스를 발굴·안내합니다.
 - 독거중증 등 위기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상담을 강화하는 한편, 장애인복지관·발달장애인센터와의 동행상담을 확대합니다.
-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에 장애인 전문분과를 설치하여 읍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합니다.